

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

❖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

□ 관련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(도지사책무)
-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: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-3492(2025.8.1.)

□ 시행년도 : 2002년도

□ 추진계획

- 사업기간 : 2026. 1. 1. ~ 12. 31.
- 가입대상 : 도내 거주 전 연령* 중증장애인
 - * 1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26. 7. 1. 이후 가입 대상
- 사업시행주체 : 행정시
- 보험가입규정
 - 기 준 일 : 행정시의 실정에 맞게 가입
 - 보험종류 : 단체상해보험
 - 보장범위 및 내용 : 행정시 별 예산범위 내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변동가능

※ 유의사항

- ①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(친권자, 후견인 등)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.
- ②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(상법 제732조)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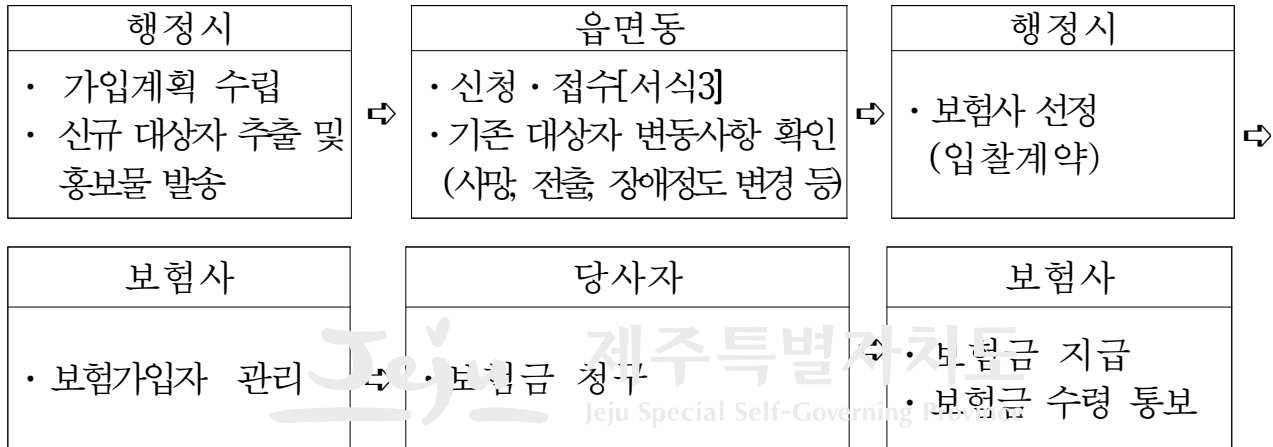
-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: 1,000만원 보상(15세 미만 제외)
-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: 최저30만~최고1,000만원 보상
- 골절진단금(치아파절제외) : 20만원
- 골절수술위로금 : 10만원
- 화상진단금 : 10만원

○ 2026년도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계	제주시	서귀포시	비고
179,827	128,446	51,381	

□ 보험가입 및 지급절차



※ 유의사항

-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
- 기존 가입자 중 변동사항(사망·도외전출·장애정도 변경 등)이 발생한 경우, 지원 제외
- 기존가입자의 변동사항 확인 등의 시점은 보험 계약일로 함
- 도내 행정시간 전출이 되더라도 보험가입 유지

※ 지급제한(면책사항) : 보험관련규정 따라 적용

- 피보험자의 고의, 자해, 자살, 자살미수,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
- 지진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, 전쟁, 사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
- 상법 제732조(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)에 따른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

□ 보고사항

- 행정시에서는 보험가입 후 읍면동 및 대상자에게 보험가입 내용 통보